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76 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 곽상언·박홍근·문대림

신영대 · 염태영 · 이개호

전진숙・김 윤・서영교

전현희 • 박희승 • 임광현

박정현 · 정일영 · 전재수

백혜련 • 문진석 • 이정헌

김남근 • 이해식 • 안태준

유동수 · 이상식 · 홍기원

박수현 • 이정문 • 이기헌

황정아 • 권향엽 • 최민희

강선우 · 김문수 · 김영배

박지원・김 현・정진욱

이광희 • 박범계 • 이재관

민병덕 · 손명수 · 양부남

정태호 · 오세희 · 백승아

이재강 · 송재봉 · 이재정

윤건영 • 이병진 • 김성환

권칠승 • 이용선 • 김주영

의원(54인)

제안이유

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

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,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·시위가 이어졌음. 종로구에 신고된집회는 무려 438건인데,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. 총 누적 집회기간은 4,097일이고, 총 신고인원은 1,136만 여명에 달함. 집회·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이고, 차량은 95대였으며, 현장에서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음(2024. 12. 4.경부터 2025. 2. 28.까지 집계된 결과).

위와 같은 집회·시위 및 집회·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주요 진입로 통제와 소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종로 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,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.

그런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, 집회·시위 및 집회·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.

이에, 집회·시위 및 집회·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 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·시위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함(안 제1조).
- 나. 집회·시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 조).
- 라.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 도록 하고, 지원금의 지급·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9조).
- 바. 집회·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.
- 사.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 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·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 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집회·시위"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.
 - 2. "종로구 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로구인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집회·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발생한 집회·시위와 관련된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 제5조(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회 ·시위로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 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원금의 우선 지급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종로구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액(이하 이 항에서 "우선 지급액"이라 한다)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우선 지급액과의 차액이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원금의 환수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- 에 따라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
-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지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8조(이의신청) ① 제5조제3항,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, 증감 또는 환수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) ①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원금 지급의 대상, 기준,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
- 2. 제6조에 따른 지원금 우선 지급, 상환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
- 3.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,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매출액 감소율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종로구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, 개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- 1. 대표자의 성명,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
- 2. 사업자등록번호, 매출액, 개업일, 폐업일,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3. 그 밖에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- 제11조(실태조사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·시위와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12조(융자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회·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조세의 감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제14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·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6조(벌칙)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